



# 해외 경쟁정책 동향

• 본 연합회 •

## 미국

### 일본인, 국제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소수됨

일본인 임원은 국제적인 반트러스트의 공모 참가에 대한 유죄인정에 동의했다.

반트러스트 행위로 미국에서 금고형에 처해지는 최초의 일본국민이 된다.

법무부는 일본 굴지의 화학기업 다이셀 화학공업의 임원인 Hitoshi Hayashi는 식품의 방부제산업에 있어서 17년간 경쟁을 억압한 국제적 공모에서의 그의 역할로 인해 미국에서 3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지고, 2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유죄인정에 동의하였다고 발표했다. 피고 Hayashi가 동의한 형벌은 법정 승인이 필요하다. 법정이 승인한 경우 피고는 반트러스트 위반으로 미국에서 금고형에 처해지는 최초의 일본인이 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금

일 다시 제기된 일본거주자 Hayashi의 죄상은 그가 공모에 참가한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사이에 미국과 기타 다른 지역에 있어서 솔베이트에 관한 가격유지 및 판매량 할당에 대해서이다. Hayashi는 솔베이트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연방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에 동의하고 있다.

「금일의 고소는 법무부가 국경선을 초월하여 반트러스트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하였다. 우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미국의 산업 및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공모자를 심사하고 소추하는 것에 전심하고 있다」고 Hewitt R. Pate 법무부 반트러스트 국장은 말했다.

미국과 기타 다른 나라에서의 솔베이트 판매에 관한 가격유지 및 판매량 할당에 관한 공모로 미국의 상업은 대략 10억 달러 영향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언급하였다. (칼륨 솔베이트 및 솔빅산을 포함하는) 약 2억 달러 상당의 솔베이트가 매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다. 솔베이트는 주로 구

이, 와인, 치즈와 같은 수분이 많고 당분이 높은 식품에 곰팡이 억제물질로 사용되는 화학방부제이다.

피고 Hayashi는 2001년 1월에 솔베이트 카르텔 참가로 다른 3인의 외국인 피고와 함께 기소되었다. 지금까지 그는 미국의 관할 밖으로 도주해 있다.

피고 Hayashi는 일단 금일의 선고로 인해 2001년 1월 23일의 기소는 기각되었다. 2001년 1월 23일의 기소는 다른 3인의 피고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지속될 것이다.

유럽, 일본 및 미국의 각 사는 공모에 의한 반트러스트 죄상에 대해 이미 유죄의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기업은 총액 1억 3,2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을 선고받았다.

피고 Hayashi는 이하의 사실에 의해, 솔베이트 생산자간에 경쟁을 억제하고 제거하려고 공모한 것으로 소추되었다.

•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솔베이트 가격 및 판매량을 논의하기 위해 모임과 회합에 참가

- 모임 및 회합에서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솔베이트 가격의 상승 및 유지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가격을 올릴 것인가에 동의
- 모임 및 회합에서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솔베이트의 판매량을 주요 생산자간에 할당하는 것에 동의
- 도달한 합의에 따라서 가격통지 및 가격시세를 통지
- 동의된 가격 및 판매량을 고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집행하기 위해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 솔베이트 판매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

James M. Griffin 반트러스트국형사담당차장은 「법무부는 국제카르텔에 의한 이러한 사건 및 다른 미국 반트러스트법 위반에 대하여 정보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금일의 소추 및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얻는 협력은 우리의 협력을 높이고 촉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피고 Hayashi는 2004년 6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인 경우 최대 금고 3년 및 35만 달러의 벌금을 개인에게 부과하게 하는 서면법 제1조 위반으로 소추되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의 2배 또는 범죄의 희생자가 당한 손실의 2배 어느 쪽이 법정상의 벌금보다도 큰 경우 벌금의 상한은 그 이익 또는 손실의 2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

금일의 사안은 반트러스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및 샌프란시스코 연

방심사국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계속 중인 심사가 발단이 되었다.

2004. 8. 5.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발표문

### 연방법무부, 국제적인 화학제품 회사들의 담합행위 기소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Degussa U.K. Holdings Ltd.는 전세계 유기 과산화물(organic peroxides) 시장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1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연방법무부는 발표했다.

유기 과산화물은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들과 고무제품들의 생산이나, 폴리염화비닐, 고밀도 또는 저밀도의 폴리에틸렌 및 대부분의 폴리스티렌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공업용 화학물이다.

Degussa U.K. Holdings Ltd.는 1997년 8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미국과 기타 국가들에서 유기 과산화물을 판매하면서 가격고정을 한 혐의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현재는 독일에 대규모 자회사인 Degussa AG를 두고 있지만, 카르텔 행위를 할 당시에는 Laporte plc.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독자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Degussa U.K. Holdings Ltd.는 현재 유기 과산화물 시장에서의 반경쟁

적 행위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표한 상태이다.

Degussa U.K. Holdings는 이러한 담합으로 유죄가 인정된 두 번째 회사가 되었다. 지난 2002년 3월에 프랑스의 화학제품 회사인 Elf Atochem이 유죄가 인정되어 35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가격고정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어디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적발하여 기소하겠다는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2004. 9. 20. 연방법무부

### 연방거래위원회, Magellan과 Shell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연방거래위원회는 Magellan Midstream Partners, L.P.(이하 Magellan)가 Royal Dutch Petroleum Company(이하 Shell)의 자산 중 49,240만 달러에 해당하는 파이프라인과 터미널을 취득할 수 있다고 동의명령서를 통해 승인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클라호마시에 있는 정유제품 터미널을 6개월 이내에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이 붙어있다. 이러한 매각 조건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

한 것으로서, Magellan은 오클라호마시의 터미널이 매각될 때까지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Magellan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연방거래위원회가 관재인을 선정하여 매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경우, 자산의 취득 후에 오클라호마시에 있는 정유 운송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고 Susan A. Creighton 연방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말했다. 또한 “이번 동의명령을 통해 Magellan은 하나의 터미널은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터미널만 보유하게 되어 경쟁과 소비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Magellan은 주식의 64%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36%는 Magellan Midstream Holdings, L.P.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정유 및 암모니아의 저장, 운송 및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 중부 지방에 석유를 운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터미널 시스템, 걸프 코스트에서 뉴욕항을 이은 해저 터미널, 미국 남동부 지방에 위치한 내륙 석유제품 터미널 및 내륙지방에 있는 암모니아 파이프라인 시스템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2003년에 Magellan은 약 48,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12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Shell은 다국적 에너지 회사로서, 휘발유, 경유, 젯트연료, 모터오일, 윤활유 및 기타 제품 등과 같이 광범위한 석유관련 제품들의 생산, 정제, 유통, 운송, 저장 및 판매 등의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Shell Oil Company는 미국에 있는 Royal Dutch/Shell 그룹의 계열사로서, 주식의 60%는 네덜란드의 Royal Dutch Petroleum Company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영국의 The Shell Transport and Trading Company, plc.가 소유하고 있다. Shell은 2003년에 2,68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약 1,24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4년 6월 23일에 Magellan과 Shell은 49,24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Magellan은 Shell로부터 오클라호마시에 있는 경질유 터미널을 포함하여 미국 중서부에 있는 일련의 파이프라인과 터미널을 양수받기로 되어 있었다.

2004. 9. 29. 연방거래위원회

### 미국 바이엘사, 카르텔에 참가한 혐의 인정

독일 바이엘사의 지사인 미국 피츠버그에 위치한 바이엘사는 식료품점

용 비닐백, 신발창 및 자동차용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재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담합에 참가한 사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3,300만 달러의 형사적 벌금을 물기로 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번 기소는 폴리에스테르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의 결과로서 나타난 첫 번째 쾌거라고 연방법무부는 평가하고 있다.

폴리에스테르(Polyester polyols)는 자동차의 코팅, 필터, 벨트 및 개스킷, 접착제, 방음제 및 직물제품에 사용된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화학제품은 지방성 폴리에스테르로서 지방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는 다른 화학제품들의 탄성과 강도를 높여주며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의하면, 바이엘사는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다른 회사 및 개인들과 미국내 지방성 폴리에스테르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 또는 감소시키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에 바이엘사는 향후 정부의 조사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번 기소는 불법적인 카르텔 행위를 제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R. Hewitt Pate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연방법무부가 바이엘사 및 그와 담합한 참가자들을 기소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미국 및 기타 국가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방성 폴리에스테르의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할 것을 논의하기 위한 회합에 참가

- 이러한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 등과 관련된 회합에 참가
- 협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공표
- 미국 및 기타 국가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방성 폴리에스테르의 판매를 위한 정보를 교환

2004. 9. 30. 연방법무부

## EU

### 유럽위원회, 영국의 국제로밍서비스 요금에 이의제기

유럽위원회는 영국의 휴대전화 네트워크 사업자(MNOs)인 O2 및 Vodafone 각각에 대한 이의고지서를 송부했다. 이의고지서는 O2 및 Vodafone 양사가 다른 MNOs에 대해 과하고 있는 도매단계에 있어서의 국제로밍서비스 요금에 관한 것이다. 다른 MNOs는 자사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영국 체재중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O2와 Vodafone의 영국 네트워크로 로밍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상황은 국제로밍으로 알려져 있다. 고액의 로밍 요금은 영국을 여행하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왔다.

「EU에서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팽대하고, 이제는 EU 시민의 81%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몇몇 회원국에서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비율은 90%에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유럽인은 점차 매년마다 여행을 하게 되어 휴대전화 가입자가 외국에서 자기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자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빈도가 되었다. 그러나 국제로밍 요금이 고액이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사용은 매우 높은 금액이 된다. 또한 이 높은 가격 수준은 국내통화료에 적용되는 상당히 낮은 요금과 두드러지게 대비된다. 나는 금일 행한 우리의 조치가 이러한 상태를 시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Mario Monti 위원은 언급했다.

위원회의 심사에서는 Vodafone은 1997년부터 적어도 2003년 9월 말까지 사이에 자사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도매단계로의 국제로밍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영국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착취를 하였다. 동 남용에 의해 Vodafone은 유럽의 MNOs에 대하여 불공평하고도 필요 이상의 요금(다른 말로는 IOTs 또는 「휴대회사 요금」으로 알려져 있다)을 과하였다.

위원회는 O2가 행한 IOTs 요금에 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그 기간은 1998년초부터 적어도 2003년 9월말까지이다.

2001년 6월부터 개시한 조사기간

에 모아진 증거를 토대로, 위원회는 적어도 1997년 또는 1998년부터 2003년 9월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각각 독립한 영국 네트워크는 별도의 시장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O2와 Vodafone 양사는 당해 기간에 자사의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지배적지위를 향수(享受)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IOTs의 수준에 관한한 문제가 되는 로밍서비스가 MNOs에 의해 공급된 다른 비교가능한 서비스에 비해 몇 배 높은 이익을 향수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특히 로밍 통화요금은 상기 기간에 있어서 O2와 Vodafone이 도매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독립서비스 사업자(ISPs)에 가입하고 있는 영국의 가입자가 행하는 같은 형태의 통화에 적용하고 있는 요금보다 훨씬 높게 되었다. 영국의 ISPs 가입자에 대한 도매통화접근(access)에 관한 공급은 외국의 MNOs-당해 MNOs의 이용자는 영국에서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이용한다-에 대한 도매국제로밍서비스 공급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때문에 위원회는 2개의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서비스간의 다양한 가격차를 문제시하였다.

이의고지서는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위원회의 예비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O2 및 Vodafone 양사에게는 이후 위원회의 예비적인 판단에 대하여 서면 및 구두로 응답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비적인 판단은 결코 조사의 결론을 예측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2004. 7. 26. 유럽위원회 발표문

### 유럽위원회의, VISA association membership 규칙에 대한 문제 지적

위원회의 이의고지 - 위원회가 VISA association 회원자격규칙 (membership rule)을 조사한 결과에 대한 예비적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정식문서 - 는 VISA International 규약에 있어서의 규칙에 관한 것이다. 이 규칙에 의하면 VISA International Board는 VISA의 경쟁자가 된다고 VISA International Board가 인정한 신청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위원회는 이 VISA 회원자격규칙이 VISA association 멤버십에 대한 모든 신청자에게 평등하게 객관적이고도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 규칙은 잠재적 신규가입자가 거래처에 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 관하여 VISA는 EEA 전체에 걸쳐서 유력한 시장지위에 있다.

위원회의 이의고지서는 EU에서 상품과 거래상대방에게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결제카드 시장부문은 국가의 경계선에 따라 분할

되어 있고, 신용카드 시장의 최소 경쟁단위는 EEA 회원국에 상당한다. 매상회수·보증회사(acquirer)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선택 폭은 제한되어 있고, 때때로 한 개의 독점적인 매상회수·보증회사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의 예비적 심사에 의하면 상기의 VISA 규칙은 잠재적 신규가입자는 EEA 어느 곳에서도 VISA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EEA에 있어서 범유럽 카드 비즈니스 전략을 갖는 잠재적인 유력한 신규참입자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거래처의 매상회수업무 시장의 보다 많은 경쟁의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매상회수업무의 신규 발전부문은 다른 EEA를 거점으로 하는 매상회수·보증회사와 근거지 서비스 제공회사에서 형성된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나 VISA 멤버십이 거부된다면 이와 같은 잠재적 신규참입자는 국경을 초월한 매상회수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Morgan Stanley Dean Witter (MSDW)는 Discover라는 상표의 신용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VISA는 동사를 경쟁자로 보았다. 2004년 4월 MSDW는 유럽위원회가 VISA에 대해 VISA 멤버십으로부터 MSDW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원자격규칙을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구하는 주장을 유럽위원회

에 제기하였다.

Discover 네트워크의 소유자인 MSDW가 VISA 멤버십이 거부된 반면, 몇몇의 다른 결제카드 방식의 소유자는 VISA 멤버로서 인정되었다.

이것은 예를 들면, Diners Club 네트워크의 소유자인 Citigroup, JCB의 주요주주인 복수의 일본 은행, Aurora 결제카드 네트워크의 운영자인 Cetelem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VISA는 유럽을 포함하는 20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Diners Club 같은글로벌 네트워크가 미국에서만 활동하며, 유럽에서 어떠한 실재도 가지지 못하는 Discover 같은 지역네트워크 보다도 VISA에 덜 위협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밀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VISA와 상당히 비교되기 쉬운 MasterCard는 문제가 되고 있는 VISA 규칙과 유사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나 MSDW는 MasterCard의 멤버로서 인정되어 왔다.

VISA는 지금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구두진술에서 자신의 주장을 언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4. 8. 3. 유럽위원회 발표문

## EU위원회, 통신사간의 기업결합 허용

EU위원회는 스웨덴의 통신회사인 TeliaSonera가 Orange사의 덴마크 이동통신 사업부문을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을 허용하더라도 덴마크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 강력한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경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0일에 EU위원회는 양사간의 기업결합 계획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았다.

TeliaSonera는 북유럽과 발틱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통신회사이다. 이 회사는 덴마크에서 제4위 사업자이며,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및 데이터 통신 사업도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텔레콤이 모회사인 Orange사는 덴마크에서 제3위 사업자이며, 1997년부터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Orange사는 이동통신 사업 이외에도 유선전화와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나마 활동하고 있다.

EU위원회는 덴마크 이동통신 시장을 상대로 신고된 기업결합 계획과 관련한 경쟁효과를 분석하였다. TeliaSonera사와 Orange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덴마크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는 4사업자에서 3사업자로 감소하게 된다. 위원회는 신고된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효과가 이동통신 도매시장

과 소매시장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기업결합으로 덴마크 시장에는 제3위의 보다 강력한 사업자가 형성되어, 제1위 사업자인 TDC사와 제2위 사업자인 Sonofon사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04. 9. 24. EU위원회

## EU위원회, 담배 유통회사간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스페인 물류회사인 Logista사가 Etinera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다. Logista사는 담배 제조그룹인 Altadis의 계열사이다. Etinera사는 이탈리아내 독점적인 담배 유통회사이며, 현재 British American Tobacco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EU위원회는 이탈리아 담배 유통시장의 상위시장인 담배 제조시장에서 Altadis사의 지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지난 2004년 8월 30일에 Logista사가 Etinera사의 담배 물류사업 부문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신고해 옴에 따라 이루어졌다.

Logista는 스페인에서 물류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특히 담배의 유통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

요 담배 제조사인 French/Spanish Altadis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그룹은 이탈리아 담배 제조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

한편 Etinera는 담배 제조사인 British American Tobacco(이하 BAT) 그룹 계열이며, 그 자회사인 British American Tobacco Italia(공식명칭은 Ente Tabacchi Italiani; 이하 ETI)가 지배하고 있다. Etinera는 이탈리아 내에서 주요 담배 제조사인 BAT/ETI와 필립모리스사의 담배 제품들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1975년부터 담배 유통시장이 자유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tinera가 이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의 경쟁사들이 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시가와 관련한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EU위원회는 신고된 기업결합이 담배 유통시장과 수직적으로 연결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조사했다. 특히 상위시장인 담배 제조와 판매시장에서의 경쟁효과를 분석했다. 주로 포장단위로 판매되는 이탈리아 담배 시장은 시장이 매우 집중되어 있어서, 필립모리스나 BAT/ETI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BAT/ETI와는 달리, Altadis는 이번 기업결합 후에도 담배 제조 및 판매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Etinera는 자신의 모회사의 담

배를 유통하기 위해 다른 경쟁사들을 차별하기보다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상의 문제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지었다.

2004. 10. 5. EU위원회

**독일**

**경쟁전문가들, 경쟁보호와 소비자 이익에 관한 토론회 개최**

경쟁법/정책 전문가들의 모임인 카르텔법 작업반에서는 2004년 9월 27일에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경쟁의 보호에 있어서 새로운 경제방법론의 적용과 소비자이익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모임에는 대학의 법학과 경제학 교수들 및 연방법원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카르텔전담부 판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유럽위원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연방카르텔청에서 작성한 “새로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경쟁 보호와 소비자이익”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경쟁법과 소비자보호가 얼마만큼이나 조화될 수 있으며 어느 부분에서 이들이 상호 충돌하는지가 다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가격이나 지역 할당 담합 및 입찰담합은 결국 소비

자의 이익을 해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 카르텔의 결과로 나타난 가격인상이나 인하된 가격의 유지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조사 및 처벌 업무는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카르텔 위반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없이는 소비자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의 인하에 대해서까지 경쟁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자의 그러한 전략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환영받을 만한 조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경쟁자가 시장에서 일단 퇴출되면, 그 후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카르텔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경제학적으로 다양한 면이 논의되었다. 모든 토론 참석자들은 원칙적으로 경제학적 방법론이 경쟁상의 문제들을 보다 잘 이해시키고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으로는 관련시장획정이 주요한 적용범위로서 다루어졌다. 경제학적 방법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어디서 한

계를 정할 수 있는지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즉, 기초모델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 획득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경쟁당국이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지는 않은지, 정략적인 방법론으로서 가격경쟁이 중시됨으로써 경쟁의 질이나 혁신경쟁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지 않는지, 경제학적 방법론을 강조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규제의 중심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지 않는지 등이 논의되었다.

연방카르텔청장은 독일 경쟁법은 전통적으로 경제학적인 토대 위에서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카르텔청의 직원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연방 카르텔청 직원의 절반 정도가 경제학 전공자들이기 때문이다. 연방카르텔청장은 또한 “나는 각각의 경쟁시스템에서 중요한 과제로서, 경제학적인 새로운 인식을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경쟁상의 문제를 재검토, 개선 및 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법체계와도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04. 9. 28. 연방카르텔청

## 연방카르텔청, 가구용 스프링 제조업사간의 기업결합 금지

연방카르텔청은 미국의 Leggett & Platt 그룹이 AGRO사의 가구용 스프링 생산부문의 영업부분(이하 AGRO)을 양도하는 기업결합 계획을 금지했다. Leggett & Platt 그룹이 AGRO사와 결합함으로써 독일내 매트리스용 스프링 시장과 천을 씌운 가구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는 매트리스 구입시 흔히 “주머니스프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다.

AGRO는 독일내 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선도적인 기업이다. 계획된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AGRO와 Leggett & Platt의 결합시장점유율은 6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경쟁사업자들은 매우 소규모이기 때문에 결합된 AGRO와 Leggett & Platt에 대응할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경쟁당국은 판단했다. 또한 유럽연합 역내 시장 차원에서 보면, Leggett & Platt는 AGRO의 뒤를 잇는 선도적 기업에 속한다. 유럽 차원에서 이들의 결합 시장점유율은 독일에서의 그것과 유사해진다. 한편 미국의 가구용 스프링 시장에서 Leggett & Platt은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Leggett & Platt은 또한 스위스에 가구용 스프링을 제작하는 기계를 생산하는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기

도 하다.

이번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는 독일내 매트리스와 관련 가구를 만드는 대규모 제조업자들과 가구용 스프링 생산자들과, 그리고 외국의 경쟁사업자들과 수요자 및 그 협회들에 대한 설문도 이루어졌다.

이번 기업결합 금지 결정에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 기업들은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004. 9. 30. 연방카르텔청

## 일본

### 공취위, 코세이 건설회사 등의 입찰담합에 대해 배제명령

공정취인위원회는 피심인 코세이 건설주식회사 외 7사(이하 피심인 8사)를 포함한 11사가 입찰담합을 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작년 6월 20일에 심판 개시 결정을 한 이후, 심판관을 통한 심판 절차를 진행해 왔다. 피심인 8사는 늦어도 2000년 4월 1일 이후 교토시가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는 예정가격이 5,000만엔 이상의 공사에서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심리판결 했다.

이에 따라 공정취인위원회는 피심

인 8사에 대해 이러한 담합행위를 취소하고, 앞으로 수주조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교토시에 통지할 것도 명령했다.

피심인 8사를 포함한 13사는 공동으로 2000년 4월 1일 이후 교토시가 발주한 특정도장공사에서 수주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 이외의 사업자는 수주예정자가 정한 가격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교토시에서 발주한 특정도장공사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2004. 9. 21. 공정취인위원회

### 공취위, 대규모 소매업자의 남용 행위 규제를 위한 고시 제정 작업

공정취인위원회는 대규모 소매업자와 그에게 상품을 납입하는 사업자(이하 납입업자)와의 납입거래에 있어서 공정화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납입거래에 있어서 규제의 명확화, 실태조사에 근거한 개선 지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행해왔다.

1991년에는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유통·거래관행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대규모 소매업자의 납입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지침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편의점 본부, 슈퍼마켓 등의 납입거래에 있어서의 우월적지



위의 남용행위에 대해서 일반지정고시 또는 백화점업고시에 근거하여,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를 하고 있다.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지정고시에 의해 16가지의 부당한 행위유형을 지정하고 있고, 백화점업고시인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과 같이 특정 업종에 적용되는 지침이 있다.

대규모 소매업자의 납입업자에 대한 우월적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기본적 지침인 백화점업고시는 1998년에 경품 제공과 관련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일부 개정을 한 것이 외에는 제정 당시의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소매업자와 관련하여 이른바 백화점 외에도 슈퍼마켓이나 의료·가전·의약품·화장품 등 전문 양판점, 홈센터 또는 편의점 본부 등 대규모 소매업자의 업종이나 업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또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소매업자에 의한 납입거래상의 문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서 현행 백화점업고시가 최근의 유통 실태와 맞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백화점업고시를 재검토하여 대규모 소매업자에 의한 우월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

는 고시(이하 새로운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납입거래에 있어서 거래 공정화를 한층 더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취인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고시 제정에 있어서 주요한 논점으로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고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범위이다. 현행 백화점업고시는 적용대상이 되는 「백화점업」을 일정한 매장 면적(동경시 특별구 및 일부 도시에 있어서는 3,000평방미터, 그 외 시읍면에 있어서는 1,500평방미터 이상)을 가지고, 일반소비자에 의해 일상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상품을 소매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백화점업자」란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포를 가지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매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대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규모 소매업자나 단일 품종의 전문적 분야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규모 소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성장 추세와 비례하여 여러 가지 납입거래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되는 대규모 소매업자의 요건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 면적을 가지는 것이나 취급상품이 여러 종류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현행 백화점업고시에서

는 부당반품, 부당가격인하, 부당한 위탁판매 거래, 수령거부, 종업원 파견 요청 등을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적용대상 행위의 범위에 관해서는 현재 납입거래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 유형을 현행 고시가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및 납입거래의 실태에 맞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현행 규정에는 없는 대규모 소매업자의 협찬금 등의 요청이나 물품·서비스의 구입 강제에 대해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앞으로 납입업자 및 대규모 소매업자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관련업계로부터도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새로운 고시의 원안을 작성·공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2004. 9. 24. 공정취인위원회

## 공취위, 중국 공무원에 대해 독점금지법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수 실시

공정취인위원회는 2004년 10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및 상무부 직원 9명을 상대로 독점금지법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중국은 1992년 10월 공산당 대회에서 「사회주의

적 시장경제」의 실현을 경제개혁의 목표로 결정한 후, 1996년에 채택된 제9차 5개년 계획에서는 경제개혁의 심화를 중점 정책의 하나로 내걸어 현대 기업 법제의 확립이나 상품시장의 발전, 경제 입법의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혁의 일환으로서 경쟁정책과 관련해서도 경쟁법안 제정의 기초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일본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관한 경험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독점금지법 전반에 대해 지도·조언을 요구해 왔다고 공정취인위원회는 발표했다. 이 때문에 공정취인위원회는 중국 정부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번이 제7회 째가 된다.

한편 중국에서는 1993년에 부당경쟁방지법이 제정되어 끼워팔기, 부당경품, 입찰담합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997년에는 가격법이 제정되어 가격카르텔의 금지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동 법에 근거해 가격독점행위 금지 잠정규정이 제정되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경쟁법을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중이다.

2004. 10. 4. 공정취인위원회